

영현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고 성 군  
(기획감사실)

# 영현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18. 4. 24.(화) ~ 4. 26.(목), 3일간
- 감사대상: 영현면
- 감사인원: 기획감사실장 외 5명(재무과 1명 포함)
- 감사범위: 2016. 5. ~ 2018. 4. 면정업무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과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 실태
  - 각종 공사 추진 및 세수 부과·징수 실태
  - 각종 민원처리의 관련법규 및 절차 이행여부
  - 농지관리 등 산업경제행정 전반
  - 민방위, 주민등록, 인감, 확정일자 등 기초 행정분야 전반

## II. 감사성과

- 행정상·재정상 조치

| 구분       | 행 정 상 (건) |    |    |          | 재 정 상 (건,원) |         |         |        |  |
|----------|-----------|----|----|----------|-------------|---------|---------|--------|--|
|          | 계         | 시정 | 주의 | 현지<br>조치 | 계           | 회수      | 추징      | 감액     |  |
| 처분<br>요구 | 17        | 4  | 6  | 7        | 건수          | 3       | 2       | 1      |  |
|          |           |    |    |          | 금액          | 996,000 | 986,000 | 10,000 |  |

- 신분상 조치 : 훈계2명, 주의6명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 일련<br>번호 | 건 명                              | 요 구 내 용 |     |         | 비고      |
|----------|----------------------------------|---------|-----|---------|---------|
|          |                                  | 행정상     | 재정상 |         |         |
|          |                                  |         | 구분  | 금액(원)   |         |
| 1        | 공사계약 집행업무 소홀                     | 주의      |     |         |         |
| 2        | 공유(행정)재산 유지관리 업무 소홀              | 시정      |     |         |         |
| 3        | 매촌소류지개보수사업 계약 업무 부적정             | 주의      |     |         |         |
| 4        | 계약 시행품의 부적정                      | 주의      |     |         |         |
| 5        | 침점1소하천 개보수사업 등 2건 준공전 정산업무 소홀    | 시정      | 회수  | 693,000 |         |
| 6        | 연화1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설계서작성 업무 소홀       | 시정      | 회수  | 293,000 |         |
| 7        |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주의      |     |         |         |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업무 소홀              | 현지조치    |     |         |         |
| 9        |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소홀     | 현지조치    |     |         |         |
| 10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자 서명누락      | 현지조치    |     |         |         |
| 11       |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징구 누락           | 시정      | 추징  | 10,000  |         |
| 12       | 정부수입인지 관리업무 소홀                   | 현지조치    |     |         |         |
| 13       | 인증기용증지 수입관리 부적정                  | 주의      |     |         |         |
| 14       |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 주의      |     |         |         |
| 15       | 전입신고 확인업무 소홀                     | 현지조치    |     |         |         |
| 16       | 이륜자동차 신고수리 업무 부적정                | 주의      |     |         |         |
| 17       | 2017년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접수증 배부 불이행 | 현지조치    |     |         |         |
| 합 계      |                                  | 계       | 17  | 계       | 996,000 |
|          |                                  | 시정      | 4   | 회수      | 986,000 |
|          |                                  | 주의      | 7   | 추징      | 10,000  |
|          |                                  | 현지조치    | 6   | 기타      | 0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 \$\$면 | 2016 ~ 2017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주의</span> | -      | -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공사계약 집행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공사명                    | 계약업체           | 당초         |                        |   | 변경         |                        |   | 비고<br>(변경<br>계약<br>품의일) |
|------------------------|----------------|------------|------------------------|---|------------|------------------------|---|-------------------------|
|                        |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사업내용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사업내용                                    |                         |
| \$\$면 청사현관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 ++건설 (주) ***   | 35,084,900 | '16.5.30.~<br>'16.7.8. | -철거공<br>-타일공<br>-설비공                    | 40,000,000 | '16.5.30.~<br>16.7.8.  | -철거공<br>-타일공<br>-설비공<br>-전기공            | '16.6.27.               |
| \$\$면 사무소 옥상방수공사       | ++건설 ++(주) *** | 17,298,000 | '17.3.24.~<br>'17.5.1. | -우레탄공사<br>A=464.4㎡<br>-방수철거<br>A=185.7㎡ | 15,820,000 | '17.3.24.~<br>17.5.14. | -우레탄공사<br>A=464.4㎡<br>-방수철거<br>A=133.2㎡ | '17.5.12.               |

### 【내 용】

-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

획단계부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면에서는

- '\$\$면청사 현관 및 화장실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결재를 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에 회계담당자 및 분임경리관 확인란에도 날인이 누락된 채 계약을 집행하였으며
-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기공사를 추가발주 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설계 변경하여 시설물유지관리 업체인 '%%건설(주) 대표 \$\$\$'에게 설계금액을 증액시켜 주었으며
- '\$\$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시행품의 후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3개의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으나 이후 계약체결업체인 (주)\*\*건설 도장의 견적서만 가격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2개 업체[(주)%%건설, (주)@@건설]에서는 가격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견적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가격결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공사기간 중 13일의 강우일수를 사유로 2017.5.14.까지 공기연장 출장복명을 2017.4.26.하였으나 기간변경을 위한 시행품의 및 변경계약 등을 하지 않은 채 공사 준공기간 2017.5.1.을 넘겼을 뿐 아니라,
- 2017.5.8. 다시 일부구간 방부 불필요를 사유로 방수철거 면적 52.5㎡ 감소 및 계약금액 1,478,000원을 감액시키기 위한 출장복명하여 공사 준공기간이 10일이나 지난 2017.5.11.에 변경계약 시행품의를 득한 후 2017.5.12. 변경계약을 하는 등 공사계약집행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2 |             | 감사담당자 |         |       |             |
|       |             |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명    | %%%         |
| 소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6 ~ 2018 | 시정    | -       | -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공유(행정)재산 유지관리 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적 요                             | 통계목   | 납부기간                    | 납부금액(원)                                   | 비고            |
|---------------------------------|-------|-------------------------|---|---------------|
| 청사인터넷 요금<br>및 노인복지회관<br>전화요금 납부 | 공공운영비 | 2009.4월<br>~<br>2018년4월 | 인터넷요금:<br>금2,893,170원<br>전화 요금: 금528,180원 | 선관주의<br>의무 위반 |

### 【위법 · 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면에서 납부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전화요금 및 청사 인터넷요금을 확인한 결과 2007.7.31.전화 최초가입, 2008.3.7.청사 인터넷 최초가입으로 확인됨.
- 감사기간 중인 2018.4.26. KT 통신회사 직원이 \$\$면에 내방하여 확인 결과, 인터넷선은 현재 청사 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회선으로, 전화요금은 \$\$면노인복지회관 전화로 확인되었으나 전화는 불통 상태임
- 그럼에도, \$\$면에서는 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상기 대금청구서의 고객명(채무자)이 관청(고성군 또는 \$\$면사무소)이 아닌 망자(亡者) 고(故)\$\$\$ (사망신고말소: 20++.04.28., 개설당시 면 노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사망이후 현재까지 통신회사에 이를 알려 정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면 청사 인터넷요금을 사실 확인도 없이 전임자의 예산집행에 따라 그대로 답습하여 상기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을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온 바, 청사유지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상기 인터넷 및 전화는 해지 조치 후 결과 제출하고
- ▶ 공공요금 및 각종 사용료 예산을 집행할 경우 사용처 및 현재 사용여부를 확인 후 예산 집행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3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6 ~ 2017 | 주의        | -       | -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매촌소류지개보수사업 계약 업무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공 사 명          | 위 치          | 사업량                                     | 공사비(천원) |        |     | 공사기간                          | 도급자               |
|----------------|--------------|---|---------|--------|-----|-------------------------------|-------------------|
|                |              |   | 계       | 도급액    | 관급액 |                               |                   |
| 매촌소류지<br>정비공사  | \$\$면<br>신분리 | ○ 전석쌓기<br>-A=16㎡<br>○ 사석부설<br>-A=220㎡   | 21,900  | 21,900 | 0   | 2016.3.22.<br>~<br>2016.6.10. | ####(주)<br>대표 &&& |
| 매촌소류지<br>개보수사업 | \$\$면<br>신분리 | ○ 콘크리트포장공<br>-A=102㎡<br>○ 가드레일<br>-17경간 | 16,515  | 16,515 | 0   | 2016.6.15.<br>~<br>2016.7.7.  | ####(주)<br>대표 &&& |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9호, 2018.3.30.)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 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면에서는 2016.3.21. ####(주) 대표 &&&와 18,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매촌소류지 정비공사」의 경우,

- 당초 설계서에는 소류지 사석부설(A=52m)와 복구포장(A=32㎡)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후된 소류지 법면의 일부 사석 유실을 사유로 사석부설을 58m 추가 시공하기로 2016.6.3.(\$\$면-5047호) 계획을 변경하고 2016.6.8.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추가 사업 건의에 따라 2016년 1회 추경에 ‘매촌소류지 개보수사업’을 위해 2016.3.30. 건설교통과로 부터(건설교통과-13248호) 추가로 25,000천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시공 중인 ‘매촌소류지정비공사’ 계약 상대방인 ####(주) 대표 &&&와 도로포장(A=102㎡)과 안전시설물(가드레일 17경간)을 설치하기로 16,515천원에 2016.6.15.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2016.6.13. 실시한 ‘매촌소류지 정비공사’ 준공검사 및 2016.6.10. 제출된 준공검사원의 사진자료 등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설계상 반영되지 않은 도로 포장 구조물 A=102㎡의 시공을 확인하였으며, 이 목적물은 2016.6.15. 계약 체결한 ‘매촌소류지 개보수사업’의 도로포장 구조물로서 \$\$면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매촌소류지 개보수사업’의 공사를 농번기전 사업 준공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선시공하게 하여 2016.7.12.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매촌소류지 개보수사업’의 경우, 채무사유가 발생하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이 성립 된 이후 착공을 하도록 하거나, 계약이 이행 중인 ‘매촌소류지 정비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나 농번기 이전에 준공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계약 체결 전

무리하게 선착공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등을 통해 계약 전 선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4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주의        | -      | -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계약 시행품의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단위:천원)

| 공사명                | 품의금액   | 계약일        | 계약품의<br>공종    | 계약 공종<br>(정상공종) | 계약상대자             | 비고       |
|--------------------|--------|------------|---------------|-----------------|-------------------|----------|
| 평촌지구<br>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 20,160 | '17.09.01. | 상하수도설<br>비공사업 | 지하수개발·<br>이용시공업 | (주)%%**<br>&&&    | 정상<br>계약 |
| 신촌마을<br>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 20,160 | '17.10.23. | 상하수도설<br>비공사업 | 지하수개발·<br>이용시공업 | (주)%%**<br>&&&    | 정상<br>계약 |
| 연화1구마을<br>관정개발사업   | 20,160 | '17.10.30. | 상하수도설<br>비공사업 | 지하수개발·<br>이용시공업 | (주)**건설<br>\$\$\$ | 정상<br>계약 |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2.20.)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 품의자를 포함)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행 2018.1.22.][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그리고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 물품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
- 「지하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면에서는 ‘평촌지구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등 3건의 지하수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수개발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발주하여 함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계약시행 품의를 잘못 득하였음
-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업체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등 정상적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계약을 하였는 바, \$\$면에서는 ‘평촌지구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올바른 계약시행 품의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시행 품의를 득하고 관련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등 정상적인 서류 일체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계약관련 서류의 검토 없이 처리하여 계약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산업건설기본법」 및 「지하수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5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8  | 시정      | 시정    | 693,000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침전1소하천 개보수사업 등 2건 준공전 정산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현 황】**

| 공 사 명           | 위 치          | 사업량   | 공사비(천원) |        |        | 공사기간                         | 도급자                     |
|-----------------|--------------|---|---------|--------|--------|------------------------------|-------------------------|
|                 |              |   | 계       | 도급액    | 관급액    |                              |                         |
| 침전1소하천<br>개보수사업 | \$\$면침<br>점리 | ○ 다이크 L=25m<br>○ 전석쌓기<br>-A=16.6㎡<br>○ 전석깔기<br>-A=63㎡ | 21,660  | 18,830 | 2,830  | 2018.3.5.<br>~<br>2018.3.29. | (주)%%%%<br>대표 &&&       |
| 금능마을 안길<br>정비공사 | \$\$면봉<br>발리 | ○ 포장공<br>-A=2,498㎡                                    | 32,390  | 15,020 | 17,370 | 2018.3.7.<br>~<br>2018.4.2.  | (주)%%%%건<br>설<br>대표 &&& |

## 【내 용】

-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

독을 하여야 하며, 제16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가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면에서는 2018.3.2. (주)%%% 대표 &&&와 18,9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침점1소하천 개보수사업」(이하 “①”이라 한다), 2018.3.6. (주)%%%건설 대표 &&&와 15,02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금능마을 안길 정비공사」(이하 “②”라 한다) 경우,

- ①에서는 소하천정비를 정비를 위하여 전석쌓기 16.6㎡와 전석깔기 63㎡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장 시공과정을 기록한 사진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석쌓기 16.6㎡에 소요되는 전석을 설계서에 따라 구입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산재된 자연석과, 유실되어 방치된 기존 전석을 활용하여 시공을 하였다.
- ②에서는 설계서에 반영된 ‘포장포설준비작업’ 공종은 다짐장비들의 아스팔트 포설 구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좌·우 포장구간 경계에 유도선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도급자는 아스팔트 포설전 유도선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8.4.2.준공검사를 제출하였으며, \$\$면에서는 2018.4.2. 준공처리 하였다.
- \$\$면에서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하여 ①의 경우 509천원, ②의 경우 184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설계서 작성과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공사비 과다 사용 2건(693,0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고 (회수)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6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6  | 시정      | 회수    | 494,000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연화1구 용배수로정비사업 설계서작성 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공 사 명                | 위 치          | 사업량                      | 공사비(천원) |        |        | 공사기간                          | 도급자              |
|----------------------|--------------|--------------------------|---------|--------|--------|-------------------------------|------------------|
|                      |              |                          | 계       | 도급액    | 관급액    |                               |                  |
| 연화1구<br>용배수로<br>정비사업 | \$\$면연<br>화리 | ○ 답진입로7개소<br>○ 수로관L=210m | 27,002  | 16,865 | 10,137 | 2018.3.16.<br>~<br>2018.4.10. | %%%(주)<br>대표 &&& |

### 【내 용】

-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16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가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공

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면에서는 2018.3.12. %%%(주) 대표 &&&과 16,92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연화1구용배수로 정비사업」의 경우,

-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농지로 진출입하는 출입로 7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판거푸집 설치 수량 15.45㎡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설계도면과 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답 진입로는 기존 농로포장과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본공사 도급자도 인접 구조물에 접하여 시공하였으므로 농로와 진입로가 접하는 면적인 5.7㎡은 합판거푸집이 불필요하여 수량산출서 작성시 합판거푸집은 15.45㎡가 아닌 9.75㎡로 계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이를 설계에 15.45㎡으로 반영하는 등 설계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면에서는 해당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16,920천원을 지급하여 23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과다 지급한 사업비 293,000원을 회수조치 하고 (회수)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b>NO. 7</b> |      | <b>감 사 담 당 자</b>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8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주의</span> | -       | -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예산의 목적외 사용**

**1. 위법·부당내용**

**【구입 및 지출현황】**

(단위: 원)

| 품 명          | 모델명(규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     |           | 2,480,000 |               |
| 스탠드형<br>냉난방기 | PW0831R2S | 1   | 2,000,000 | 2,000,000 | 복지회관운영, 자산취득비 |
| 전기공사         | 차단기 포함    | 1   | 480,000   | 480,000   |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목적외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9호, 2018.3.30.)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면에서 2018.4.5. \*\*\*\*신고성점(주) 대표 한종태와 2,480천원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한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의 경우,
  - \$\$면에서는 2017.9.15.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요구서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난방기 1대 설치 소요예산 2,0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안은 2018고성군 고시 제2017-209호(2017.12.20.)에 의거 확정 고시되었다.
  -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 할 수 없어 그 정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면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난방 기능이 포함된 냉·난방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업체견적을 제출받았으나, 견적액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한 2,480천원의 견적가를 제출 받아 당초 예산으로 구입 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의 추가 시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 편성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 변경 요구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면 청사유지관리비 중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b>NO. 8</b> |      | <b>감 사 담 당 자</b>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br/>조치</span> | -      | -     | -     |

**제 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단위: 천원)

| 공사명                           | 청구일        | 사전동의<br>제출 서식 | 정상<br>사용서식 | 계약상대자          | 비고 |
|-------------------------------|------------|---------------|------------|----------------|----|
| 신촌지구 농업기반시설<br>정비공사 관급자재(수로관) | '16. 5. 3. | '10. 5. 5.    | '14. 5.28. | (주)&&<br>@@@   |    |
| 우레탄도막방수재 구입                   | '17. 5.18. | '10. 5. 5.    | '14. 5.28. | \$\$페인트<br>%%% |    |
| 봉발2구소하천<br>유지관리사업             | '18. 3.30. | '08.11.26.    | '17. 8.31. | &&건설(주)<br>*** |    |

### 【내 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017-6호, 2017.8.31.) 제 28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①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영제4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법령등으로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하되, 법령 등으로 동의 서식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거

나, 정보주체로부터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행정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 ④ 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이 2008.11.26. 제정된 이후 2010.5.5., 2011.8.30., 2014.5.28., 2017.8.31. 등 4차례나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2017.8.31.에는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면에서는 「신촌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관급자재(수로관) 구입」 등 3건 외 다수의 계약에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서식을 계속 사용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한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 9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br/>조치</span> | -      | -     | -     |

**제 목 :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안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된 장애인 등록증 등을 반환(회수) 받아 폐기하여야 하며
-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 반환되도록 하고, 반환 통보 안내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면에서는 2016. 5.~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등록 말소(사망자 포함) 김\*\* 등 12명 모두에게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반환이 7명에 거치는 등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0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6~2017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br/>조치</span> | -     | -     | -     |

**제 목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자 서명누락**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회계년도 | 사 업 명                      | 통계목     | 결제방법 | 카드<br>사용일자 | 금액(원)     | 비고   |
|------|----------------------------|---------|------|------------|-----------|------|
| 계    | 54건                        |         |      |            | 8,820,820 |      |
| 2016 | 사무실 소모품 구입<br>등 12건        | 201-01외 | 카드   |            | 2,464,040 | 서명누락 |
| 2017 | 민원접대 등을 위한<br>차재료 구입 등 42건 | 203-01외 | 카드   | 3.2.       | 6,356,780 | "    |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면에서는 2016년~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카드 사용을 하면서 상기 54건 매출표 서명란에 카드사용자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오찬 등 식사에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내역 영수증 징구 및 대상자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1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시정     | 추징    | 10,000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증권 징구 누락**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회계년도 | 사 업 명            | 통계목 | 결제<br>방법 | 카드<br>사용일자 | 지급명령<br>번호 | 금액(원)     | 비고                     |
|------|------------------|-----|----------|------------|------------|-----------|------------------------|
| 2017 | 꽃길조성을 위한<br>재료구입 | 재료비 | 카드       | 3.29       | 제65호       | 1,482,500 | 지역개발채권<br>매입증권<br>징구누락 |

### 【위법 · 부당내용】

-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1,000천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매입기준(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25,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는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0.75)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2에서는 매입면제대상으로 ‘바’목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로 명시하고 있음
  
- \$\$면에서는 2017년 꽃길조성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비목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아닌 재료비 1,482,500원을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매입금액 11,000원) 매입증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누락된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 10,000원을 징구 바라며 (추징)
- ▶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2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br/>조치</span> | -     | -     | -     |

**제 목 : 정부수입인지 관리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단위: 천원)

| 사업명                    | 계약금액<br>(천원) | 계약일         | 계약상대자             | 인지<br>세액 | 소인여부 | 비고 |
|------------------------|--------------|-------------|-------------------|----------|------|----|
| 매촌·연화1구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 19,800       | 2016. 5.23. | (합자)%%건설<br>###   | 20       | 미소인  |    |
| \$\$면 청사현관 및 화장실개보수 공사 | 35,084       | 2016. 5.27. | %%건설(주)<br>\$\$\$ | 40       | 미소인  |    |
| 연화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 19,800       | 2017. 3. 6. | %%%(주)<br>&&&     | 20       | 미소인  |    |
| 평촌지구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 18,220       | 2017. 9. 1. | (주)%%**<br>&&&    | 20       | 미소인  |    |
| 대촌 및 평촌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 11,729       | 2017.12. 6. | ####(주)<br>&&&    | 20       | 미소인  |    |

### 【내 용】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 35만원

- 2013.12.19.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여 수입인지의 횡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수입인지 판매 웹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 \$\$면에서는 불임의 현황과 같이 ‘매촌·연화1구마을 농업기반시설 정지공사’ 등 5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을 누락하는 등 수입인지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NO. 13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br/>조치</span> | -      | -     | -     |

**제 목 : 인증기용증지 수입관리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6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증기용증지수입 37건 249,500원에 대하여 2일~23일 지연 납부하는 등 인증기용증지 수입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NO. 14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면  | 2017 | 주의        | 조치방법   | 금액(원) | 문책자조서<br>참조 |
|  |      |           | -      | -     |             |
| <b>제 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b>   |      |           |        |       |             |
| <p><b>1. 위법·부당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 징수 철저(제로화 추진)[2016.1.25. 간부회의]</li> </ul> </li> <li>○ 관련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과-3957(2016.2.15.)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계획 통보</li> <li>- 재무과-6426(2017.2.27.)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통보</li> <li>- 재무과-37138(2017.11.6.)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li> </ul> </li> <li>○ 위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 및 소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독려사항 전산입력 관리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수감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자 150명 398건 17,512천원이며,</li> <li>○ 수감대상기간인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세 납부독려 및 체납관리카드 전산입력실적(독촉장 발송분 제외)이 310건(일일 평균 0.4건)에 불과하며, 특히 2만원이하 소액 체납이 110명, 236건, 2,256천원으로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 가능함에도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li> </ul> <p><b>2. 처분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li> </ul> |      |           |        |       |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5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br/>조치</span> | -     | -     | -     |

**제 목 : 전입신고 확인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전입신고 확인서 작성 누락 현황

| 기                  | 거주여부확인 누락 | 담당공무원확인 서명 누락 | 비고 |
|--------------------|-----------|---------------|----|
| 합계                 | 100       | 6             |    |
| 2016. 5.~2016. 12. | 25        | 5             |    |
| 2017. 1.~2017. 12. | 75        | 1             |    |

### 【내 용】

-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에게 알려야함,
-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가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하여야 함에도
- \$\$면에서는 2016.5.부터 2017년 말까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면서 사

후확인서에 전입자 거주여부 확인 누락 100건 및 담당공무원확인 등 서명누락 6건 등 총106건의 확인사항을 누락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6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주의     | -     | -     | 문책자조서<br>참조 |

**제 목 : 이륜자동차 신고수리 업무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관 리<br>읍면동 | 민원사무명                  | 신청인 | 이륜자동차 등<br>등록번호 | 차대번호                  | 수입인지 고유<br>번호         | 신고일자      | 비고          |                     |
|------------|------------------------|-----|-----------------|-----------------------|-----------------------|-----------|-------------|---------------------|
| \$\$면      | 이륜자동차<br>사용신고          | *** | 경남고성<br>사++     | LFFSA5NDM<br>G10009++ | 16071+-<br>077245541  | 2016.6.27 | 수입인지<br>미소인 |                     |
|            |                        | ### | 경남고성<br>사++     | L9STC5405<br>G18021** | 1607100-<br>0703724++ | 2016.6.13 |             |                     |
|            | 이륜자동차<br>사용폐지신고        | +++ | 경남고성<br>사++     | KMYBA3AD<br>S5C0004++ | -                     | -         | 2017.4.26   | 신고서<br>접수인,<br>결재누락 |
|            |                        | --- | 경남마산<br>마++     | 0021++                | -                     | -         | 2017.9.13   | 결재누락                |
|            |                        | *** | 경남고성<br>사++     | KR94822071<br>21000++ | -                     | -         | 2018.4.2    | 신고서<br>결재누락         |
|            |                        | +++ | 경남고성<br>사++     | KM4BE4BB4<br>911014++ | -                     | -         | 2018.3.30   | 신고서<br>결재누락         |
|            | 새로운 번호판<br>부착·봉인<br>신청 | *** | 경남고성<br>사++     | LE8SA9NDS<br>91201+++ | -                     | -         | 2018.4.18   | 신고필증<br>직인날인누<br>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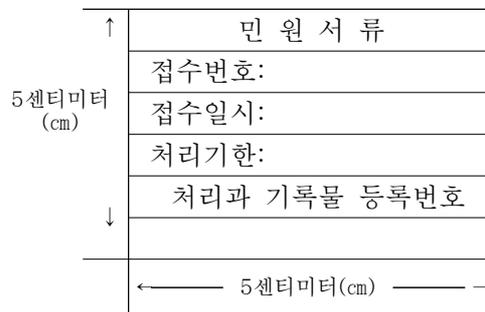
### 【내 용】

- 「인지세법」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라고 명시하고 있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별표 1]  
민원문서 표시인(제2조 관련)



- 「고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3에서는 읍면사무의 전결사항으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폐지신고,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해 담당전결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면에서는 상기 목록 경남고성사13++, 경남고성사1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건을 수리(2016.6.27., 2016.6.13.)하면서 인지세법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받았으나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른 전자적 소인의무를 불이행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 경남고성사--- ++의 이륜자동차폐지신고를 수리(2017.4.26.)하면서 민원문서에 좌측상단에 민원표시인을 찍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남마산마48--, 경남고성사12--, 경남고성사12--호는 폐지신고가 담당 전결사항임에도 신고서상 담당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 +++에게는 번호판 분실을 사유로 새로운 번호판(경남고성사13--)을 교부(2018.4.18.)하면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에 면장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7 |      | 감사담당자       |         |       |       |
|        |      |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명    | 최현민   |
| 소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면  | 2017 | <b>현지조치</b> | -       | -     | -     |

제 목 : 2017년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접수증 배부 불이행

## 1. 위법·부당내용

【현황】

| 사업년도 | 사업명              | 경영체명                     | 비고        |
|------|------------------|--------------------------|-----------|
| 2017 |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 +++ 등 266명<br>(세부 내역 별첨) | 접수증 배부 누락 |

【위법·부당내용】

-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 11페이지에서는 읍면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면에서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상기 +++ 등 266명에게 접수증을 배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